

의안번호	제 392 호
의 결 년 월 일	2001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년월일	2001. . .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의 안 번 호	392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1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□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기금의 관리 · 운용
 - 기금은 별도의 기금관리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· 운용
 - 기금출납명령관 복지환경국장,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담당
- 시설개선자금 융자 및 대여
 - 시설개선융자사업(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포함)
 - 융자금의 대여
 -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대출업무를 취급
 - 융자금 대여시 약정체결
- 기금운용계획 · 결산보고
 -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, 이를 도의회에 제출
- 시행규칙
 -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.

□ 관계법령 : 따로붙임

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“시설개선자금”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, 개·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을 설치,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.
2. “대여”이라 함은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기금의 관리·운용)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금고에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·운용한다.
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복지환경국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, 위생관리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.
 ③ 기금의 출납은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·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4조(융자사업) ① 도지사는 법 제71조제3항제1호에 의한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(HACCP) 적용을 위한 시설개선 융자사업을 할 수 있다.
 ② 융자대상, 융자신청 서류, 융자한도,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조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융자금 대여) ① 도지사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.
 ② 도지사는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금운용계획·결산보고) ① 도지사는 매회 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,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 ② 도지사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조례시행 전에 조성·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.

관련법규 발췌

<식 품 위 생 법>

第71條(食品振興基金) ①食品衛生 및 國民營養 수준의 향상을 위한 事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市·道 및 市·郡·區에 食品振興基金(이하 “基金”이라 한다)을 設置한다.

②基金은 다음 財源으로 造成한다.

1. 食品衛生團體의 出捐金
2. 第65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過徵金
3.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
4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

③基金은 다음의 事業에 사용한다.

1. 營業者의 營業施設改善을 위한 融資事業
2. 食品衛生에 관한 教育·弘報事業 및 名譽監視員에 대한 활동지원
3.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調查·研究事業
4. 削除['94. 12. 12.]
5. 食品衛生教育·研究機關의 육성 및 지원
6. 飲食文化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
7. 기타 食品衛生 및 國民營養에 관한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
4.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

④基金은 市·道知事 및 市長·郡守·區廳長이 管理·運用하되, 그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

<식품위생법시행령>

제39조의2(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)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시·군·구의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시·도 : 100분의 40
2. 시·군·구 : 100분의 60

제42조(식품진흥기금사업) ①법제71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진흥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사용하여 행할 수 있는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은 다음과 같다.

1.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조사·연구사업
2. 식품사고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
- 2의2.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의 위탁검사를 위한 식품위생 검사기관의 검사실 설치 지원
- 2의3.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업소 및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
- 2의4. 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해업소증점관리기준을 준수하는 영업자와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관련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영업자에 대한 지원
3.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지도원의 활동지원
4. 시·도지사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게 연구를 위탁하는 사업
5. 음식문화의 개선 및 식품의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
6. 식품위생 및 식품산업진흥을 위한 전산화 사업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행하는 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거나 당해 사업의 추진현황을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
- 제43조(기금의 운용)**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.
- ②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금운용계획에는 기금의 운용·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.
- ③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④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 출납명령관과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.
- ⑤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,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- ⑥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금출납명령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.
- ⑦기타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·도,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다.